##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34

발의연월일: 2025. 2. 6.

발 의 자 : 임종득 • 유용원 • 인요한

강선영・강승규・권영진

김기웅・강명구・김예지

권성동 • 박대출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 등상사·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지급신청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나, 아직 퇴직급여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있어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2항 등).

법률 제 호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2021년 6월 30일"을 "2028년 6월 30일"으로 한다.

법률 제16029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중 "2025년 6월 30일"을 "2032년 6월 30일"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 ①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금	②		
지급신청은 <u>2021년 6월 30일</u> 까	<u>2028년 6월 30일</u>		
지 하여야 한다.			
법률 제16029호 1959년 12월 31일	법률 제16029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		
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		
한) ① (생 략)	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u>2025년 6월 30일</u>	②2032년 6월 30일-		
까지 존속한다.			